

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64
----------	----

제출년월일 : 2015. 06. 03.

제 출 자 : 이 범 연 의원

1. 제안이유

-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에 따른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고, 주민 명예감독관의 행정 참여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여대상 사업장 적용(안제 2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한 주민생활에 밀접 하게 관련이 있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배수로공사,간이상수도공사,보도블럭공사, 도시계획도로공사,마을회관공사,공중화장실공사,수해복구공사 등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설 사업 관리용역업자 건설공사와 총사업비 3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제외

나. 명예감독관 위촉·해촉(안 제4조)

- 사업지역 주민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
- 착공 전에 2명이내의 명예 감독관을 위촉
- 명예감독관 위촉 해제 대상자 규정 등

-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 2)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명예감독관의 자격(안 제5조)

- 관할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로서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 명예감독관이 될 수 없는 사람 규정.
 - 1) 해당 공사의 수주업체의 임직원
 - 2) 해당 공사의 시공회사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의 임직원
 - 3) 건설공사 관련 단체·조합 등 이익단체의 임직원 등

라. 명예감독관의 임무(안 제6조)

- 1). 공사착공시 : 지리적 상황과 여건에 대한 의견제시
- 2) 공사시행시 : 시공의 적정성, 안정성과 주민 불편해소 및 민원사항해결여부, 부실공사 사전 방지를 위한 현장 위주의 감독

마. 의견제시(안 제7조)

-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시정·개선사항을 발견시 해당 공사의 시행부서, 시공자와 감독관에게 즉시 구두나 서면으로 시정개선 요구.

바. 주민설명회 개최(안 제8조)

- 공사설계시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
- 군수는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시에도 검토 후 주민설명회 개최

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주민 명예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참여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전과정을 감독하게 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조례는 평창군에서 발주 하는 공사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한 주민 생활에 밀접 하게 관련이 있는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배수로공사, 간이상수도공사,보도블럭공사,도시계획도로공사,마을회관공사,공중화장실공사,수해복구공사등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 건설공사와 총사업비 3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제외한다.

제3조(정의) "명예감독관제"란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적정시공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 및 감독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명예감독관의 위촉·위촉해제) ① 명예감독관은 사업지역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② 군수는 공사를 발주하면 그 공사의 성격에 따라 착공 전에 2명 이내의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 ④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종료 시 까지로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위촉 해제된다.
- ⑤ 추천받은 명예감독관의 결격사유 검토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착수 전 까지 지정하고 “별지 서식”에 의거 위촉장을 교부 하여야 한다.
- ⑥ 군수는 명예감독관 위촉사항과 임무 등을 착공전 공사 시공자에게 알려 협조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감독관의 자격) ① 명예감독관은 해당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할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로서 읍·면장으로 부터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공사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토목·건축 등 건설공사나 문화유적 보수공사 등 관련 직무에 종사 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자가 있을 경우 우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감독관이 될 수 없다.

1. 해당 공사의 수주업체의 임직원
2. 해당 공사의 시공회사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의 임직원
3. 건설공사 관련 단체·조합 등 이익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참관에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명예감독관의 임무 등) ① 명예감독관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사 시행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공사착공시 : 지리적 상황과 여건에 대한 의견제시
2. 공사시행시 : 시공의 적정성, 안정성과 주민 불편해소 및 민원사항해결여부, 부실공사 사전 방지를 위한 현장 위주의 감독

② 공사시행부서장과 시공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 감독관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고, 주요공정의 지도·감독시 참여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독관은 제2항의 참여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견제시) ① 명예감독관이 해당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거나 시정·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부서, 시공자와 감독관에게 즉시 구두나 서면으로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정·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공사감독일지에 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명예감독관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독관은 제1항의 요구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서면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명예감독관의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군수는 공사설계시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설명회외에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시에도 검토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위 축 장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귀하를 평창군(○○실·과·단·과,소)에서 발주하는 ○
○공사에 대하여 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감독관으로 위축 합니다.

공 사 명 :

위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